신구조문대비표

「관세법」

관세법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타법개정]	관세법 [법률 제19924호, 2023. 12. 31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0. "관세조사"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(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
제8조(기간 및 기한의 계산) ① ~ ③ (생 략)	제8조(기간 및 기한의 계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,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 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, 신청, 승인, 허가, 수리, 교부, 통지, 통고,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 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.	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, 신청, 승인, 허가, 수리, 교부, 통지, 통고
제11조(납부고지서의 송달) ①·② (생 략)	제11조(납부고지서의 송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.	
1.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	1.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신고 서류의 보관기간)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, 납세신고, 수출입신고, 반송신고, 보세화물반출입신고,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(신고필증을 포함한다)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	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

세신고, 수출입신고, 반송신고, 보세화물반출입신고,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 부 및 증거서류(신고필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 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6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세지(「소득세법」 제9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0조에 따라 국세청 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 한다)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·보관하여 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정보처

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 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 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 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 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 위조 · 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 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(관세부과의 제척기간) ①·②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◎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2조(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) ① (생 략)

-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<mark>과오납</mark>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4(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37조의4(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)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 가격결정자료(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)를 제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, 제출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~ ⑦ (생 략)

제38조(신고납부) ① (생 략)

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,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. 다만,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.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 에 이를 심사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제21조(관세부과의 제척기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22조(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) ① (현행과 같음)

- 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│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 -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 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출)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 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(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)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범위,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신고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-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,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(이하 "세액심사" 라 한다)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. 다만, 신고 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.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 한다.
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.

1. ~ 4. (생 략)

-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)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.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
- 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의 100분의 20
- 나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|나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 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

<신 설>

6. ~ 8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46조(관세환급금의 환급)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**제46조(관세환급금의 환급)**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·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 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 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확급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(생 략)

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, 덤핑방 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

[1.·2. (생 략)

제42조의2(가산세의 감면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제42조의2(가산세의 감면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5.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(제38조의2제1항에 5.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(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)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.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
- 가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/가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의 100분의 30
 - 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 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 호의 금액의 100분의 20
 - 다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관세 ·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 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 며,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 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) ① \cdot ② 제53조(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) ① \cdot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|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 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 하지 아니하며,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 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) ① 기획재정부 제56조(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)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(이하 이 조에서 "덤

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, 재심사의 결과 | 핑방지조치"라 한다)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, 약속 내용의 변경, 환 며,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, 환급 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 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, 제1항에 따 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 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 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. <단서 신설>

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덤핑방지관세의 부과
- 2. 제54조에 따른 약속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 ③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하을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,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 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 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 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 을 잃지 아니한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- 제56조의2(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"우회덤핑"이라 한다)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 - 1.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
 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물품(이하 이 조에서 "우회덤핑 물 품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 지 아니하다.
 -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-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,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) ① (생 제59조(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) ① (현행과

-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|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 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 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
- 같음)
- 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 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잡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 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잡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,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다.

1.·2. (생략)

제62조(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 제62조(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,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, 약속 내용의 변경,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획재정부렁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,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 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 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. <단서 신 설>

④ (생 략)

제83조(용도세율의 적용)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 제83조(용도세율의 적용)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 4항, 제65조, 제67조의2,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3조까 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(이 하 "용도세율"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|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 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 <삭 제> 을 받은 경우

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 하며,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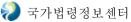
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(이하 이 조에서 "상계조 치"라 한다)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, 재심사 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, 환급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상계관세의 부과
- 2. 제60조에 따른 약속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│③ 상계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 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. 제1항에 따라 보 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렁으로 그 적 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 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. 다 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4항, 제51조, 제57조, 제63조, 제65조, 제67조의2, 제68 조,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 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 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(이하 "용도세율"이라 한다)의 적 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 다.

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2.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

③ (생략)

<삭 제> ③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품목분류체계의 수정) 기획재정부장관은 「<mark>통일</mark> 제84조(품목분류체계의 수정) 기획재정부장관은 「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 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 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게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. 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.

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관세 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 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<신 설>

<신 설>

- 1. 별표 관세율표
- 2.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
- 3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 및 별 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 하여 고시하는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이하 "품목 분류표"라 한다)

<신 설>

제86조(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) ① 불 제86조(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) ① 다 품을 수출입하려는 자,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「관 세사법」에 따른 관세사 ·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인(이하 "관세사등"이라 한다)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 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1.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
- 2.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
- 3. 「관세사법」에 따른 관세사·관세법인 또는 통관취 급법인(이하 "관세사등"이라 한다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

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 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 른 날(이하 "변경일"이라 한다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를 적용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-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| 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 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│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야 한다. <후단 삭제>

1.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<삭 제>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: 변경 전 의 품목분류 적용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변경일 전 <삭 제>

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되 품목부류 적용

가.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

- 1)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 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
- 2)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 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 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

⑥ ~ ⑧ (생 략)

<신 설>

-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 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 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.

① (생 략)

- 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,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- ③ (생 략)
- 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하다.

제87조(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) 제87조(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|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 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,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이하 "변경 일"이라 한다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 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 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: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제86조 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 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 된 품목분류 적용

가.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 류가 변경된 경우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

고인에게 유리한 경우

- 1)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 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
- 2)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
- ⑤ (현행과 같음)

⑤ (생략)

제108조(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) ① (생 략)

- 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 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 관이나 법인 · 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④ (생 략)

제110조(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) ① (생 략)

-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 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, 조사사유, 조사기간, 제118조 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 •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[1. (생 략)
- 2.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2.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(제110조의2에 따 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"관세조사" 라 한다)하는 경우
- 3. (생 략)
- ③ (생 략)

제111조(관세조사권 남용 금지) ① (생 략)

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.

제108조(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·조약·협정 등에 따라 용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·조약·협정 등에 따라 용 도세율을 적용(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 의 이행 여부를 확인(이하 이 조에서 "사후관리"라 한 다)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
-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 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주 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 · 단체 등에 재위임 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.
 - ④ (현행과 같음)
 - 제110조(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) ① (현행과 같
-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 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, 조사사유, 조사기간, 제118조 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 ·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(현행과 같음)

 - [3. (현행과 같음)
 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11조(관세조사권 남용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
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 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.

- 는 경우
- 2. ~ 5. (생 략)
- **제116조의2**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) ① 제116조 **제116조의2**(고액·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) ① 관세 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 난 관세 및 내국세등(이하 이 항에서 "체납관세등"이 라 한다)이 2억워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·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<mark>체납액</mark>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(이 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다.
- ⑤ (생략)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<mark>체납자</mark> 명단 공│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·관세포 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1.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 1.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 는 경우
 - 2. ~ 5. (현행과 같음)
 - 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
 - 1.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(이하 이 항에서 "체납관세등"이라 한다)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: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, 다만,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·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. 제270조제1항·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,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포탈관세액"이라 한다)이 연간 2억원 이 상인 자(이하 이 조에서 "관세포탈범"이라 한다): 해 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, 다만,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 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 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(이하 이 조 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 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 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[4]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[4]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 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.
 - ⑤ (현행과 같음)
 - 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제116조의6(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)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 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 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 구할 수 있다.

- 1. 납세자 본인
- 2. 「관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
- 3. 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 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
- 4.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
- 5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.
-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
- 2.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
- 3.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 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 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, 전송의 기한·주기 및 방법,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 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- ①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 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
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항에 따라 대행기 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. 이 경 우 「국세기본법」 중 "세무서장"은 "세관장"으로. "국세청장"은 "관세청장"으로 본다.

제131조(심판청구)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 제131조(심판청구)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. <후단 삭제>

<신 설>

1. 「국세기본법」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(제80조의2 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중 "세무서장" 은 "세관장"으로, "국세청장"은 "관세청장"으로 보며,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"제 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"은 각각 "제128조에 따른 결정"으로 본다.

<신 설>

2. 제121조제3항·제4항. 제123조 및 제128조(제1항제1 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 우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"20일 이내의 기간"은 "상당한 기간"으로 본다.

제137조의2(승객예약자료의 요청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제137조의2(승객예약자료의 요청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 자료(이하 이 조에서 "승객예약자료"라 한다)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 사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 사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 자료(이하 이 조에서 "승객예약자료"라 한다)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(생 략)

- 1. (현행과 같음)
- |2. 제241조제1항・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|2. 제241조제1항・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 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
- ·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 ·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 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
- 가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- 가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(이하 "마약류"라 한다)"로 한다."

나. (생략)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|**제161조(견본품 반출)**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|**제161조(견본품 반출)**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후단 신설>

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

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(2)·③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|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<mark>물품에</mark> 대하여 검|Φ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

수 있다.

⑤ (생 략)

제164조(보세구역의 자율관리) ① ~ ④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다.

⑥ (생략)

제165조(보세사의 자격 등)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 **제165조(보세사의 자격 등)**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(이하 이 조에서 "보 세사 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 이 있다.

1.·2. (생 략)

②·③ (생략)

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(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제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~ ⑦ (생 략)

-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·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 · 운영할 수 있다.
- |1. ~ 6. (생 략)
-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 다.

8. (생 략)

제206조(유치 및 예치)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**제206조(유치 및 예치)**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|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을 유치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 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64조(보세구역의 자율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.
- ⑥ (현행과 같음)

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(이하 이 조에서 "보 세사 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 이 있다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1.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(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 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.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
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 -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| 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 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•운영할 수 있다.
 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268조의2, 제269조, 제270조, 제270조의2. 제271조,7. 제268조의2, 제269조, 제270조, 제270조의2, 제271조, 제274조,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제274조, 제275조의2,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 다 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만.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하 아니한 자. 다만.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.
 - 8. (현행과 같음)

을 유치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유치사유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~ 라. (생 략)

<신 설>

②·③ (생략)

제216조(보세운송통로) ①·②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224조(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) ①세관장은 보세 제224조(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) ①세관장은 관세 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의 취소,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.

1. ~ 5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233조의2(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) ① 정부는 이 법 제233조의2(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) ① 정부는 이 법 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 · 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· 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 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 정보원(이하 "정보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~ 5. (생 략)
- 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[5] <mark>정보원</mark>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|[5]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. 유치사유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 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16조(보세운송통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.

제220조의2(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 송의 특례)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 된 선박회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.

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우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, 6 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 · 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· 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 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 정보원(이하 "원산지정보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정부는 <mark>정보원</mark>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|③ 정부는 원산지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④ 원산지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 업 및 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사업
 - 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이 법에 따른 <mark>정보원이</mark>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⑥ 이 법에 따른 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

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⑦ 관세청장은 <mark>정보원</mark>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|제246조의2(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) ① 관세청장||제246조의2(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) ① 관세청장|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 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 을 입은 자에게 보상(이하 "손실보상"이라 한다)하여 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<mark>보상금액</mark>에 관한 사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대상 및 보상금액에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(생 략)

제247조(검사 장소) ①·②(생 략)

-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 <삭 제> 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다.
 - 1.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 과 다른 경우
 - 2.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

제248조(신고의 수리)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|**제248조(신고의 수리)**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 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 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 급받을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 설>

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(7)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 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(이하 "손실보상"이라 한다) 하여야 한다.

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7조(검사 장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 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 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제264조의11(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) ① 관세청 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 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
- 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 른 마약류 통합정보
- 3.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
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266조의2(위치정보의 수집)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・보호・이

- 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| 을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 장이 정한다.
- **제268조의2(전자문서 위조·변조죄 등)** ① 제327조의4 **제268조의2(전자문서 위조·변조죄 등)** ① 제327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 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|1.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|1.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│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 계업무를 행한 자
- 2.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<mark>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</mark>2.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
- 3.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 3.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 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

제276조(허위신고죄 등) ①·②(생 략)

-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. 과실로 제2호. 제3호 또 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- 1. (생 략)
- 2. 제12조(제27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|2. 제12조제1항(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), 제98조제2항, 제109조제1항(제<mark>277조제5항제3호</mark>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 제134조제1항(제146조제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6조제2항, 제 148조제1항, 제149조, 제222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한 자
- 는 자는 제외한다.

|3의2. ~ 6. (생 략)

| 4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| 4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_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|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|

-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 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 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하 자
- 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

제276조(허위신고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로 제2호, 제3호 또 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 - 1. (현행과 같음)
 - 제외한다), 제98조제2항, 제109조제1항(제277조제6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 제134조제1항(제 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6조 제2항, 제148조제1항, 제149조, 제222조제1항(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25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
- 3.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 3.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 1항을 위반한 자. 다만, 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 1항을 위반한 자. 다만,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.

|3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

벌금에 처한다.

- 1.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<삭 제>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
- 2. (생 략)
- |3. 제135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|3. 제135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다), 제136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(제 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, 제140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, 제142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144조(제146조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0조, 제151조, 제213조 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
- 4. 제200조제3항.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 <삭 제>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 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5. (생 략)
- 6.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 <삭 제>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
- 7. (생 략)
- 8.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<삭 제>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
- ⑤ (생략)

제277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

-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단서 신설>
- 1. 제139조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1.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다), 제143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포함한다), 제152조제1항, 제155조제1항, 제156조제1항, 제159조제2항, 제160조제1항, 제161조제1항, 제186조제 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2조 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00조제1 항, 제201조제1항 · 제3항,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자
- 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 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 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

<신 설>

처한다.

- 2. (현행과 같음)
- 합하며, 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합하며,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). 제136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(제 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, 제140조 제1항 · 제4항 · 제6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. 제142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144조(제146조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0조, 제151조, 제213조 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

- 5. (현행과 같음)
- 7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277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mark>[천만</mark>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.

- 2. 제187조제1항(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2. 제200조제3항,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 한다)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 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3.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· 보고 또는 그 밖

<신 설>

- 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 2.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 2. 제187조제1항(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지 아니한 자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mark>200만</mark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
- 2. 제38조제3항, 제83조제1항, 제107조제3항, 제135조제2¹2.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 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 136조제3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, 제140조제5항, 제141조제1호 · 제3호(제146조제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7조제1항, 제 158조제2항 · 제6항, 제172조제3항, 제194조(제205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6조의2제5항, 제 198조제3항, 제199조제1항, 제202조제1항, 제214조, 제 215조(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216조제2항(제219조제4항 및 제 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21조 제1항, 제222조제3항,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 조제1항을 위반한 자
- 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를 한 자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
- 4.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4.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 1.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

-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
- 4.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│. 제139조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. 제143조제1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2조제1항, 제155조제1항, 제156조제1항, 제159조제2항, 제160조제1항, 제161조제1항, 제186조제 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2조 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00조제1 항, 제201조제1항 • 제3항,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자
 - 한다)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 세공장 · 보세건설장 · 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 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
 -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 - 지 아니한 자

- 3.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, 제102조제1|3.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│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하였거나 제출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 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.

- 가.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
- 나.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
- 다. 다른 선박회사 ·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
- 2.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

- 3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141조제2호, 제157조의2, 제162조, 제179조제2항, 제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 182조제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제2항 · 제3항, 제184조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85조제2항(제205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
- 5. 제160조제4항(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5. 제159조제6항, 제180조제3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6. 제177조제2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6.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다), 제180조제4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 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7. 제180조제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7.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 다)・제2항(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다). 제193조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 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

- 2. 제38조제3항, 제83조제1항, 제107조제3항, 제135조제2 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 136조제3항(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, 제140조제5항, 제141조제1호 · 제3호(제146조제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제157조제1항. 제 158조제2항ㆍ제6항, 제172조제3항, 제194조(제205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6조의2제5항, 제 198조제3항, 제199조제1항, 제202조제1항, 제214조. 제 215조(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16조제2항 · 제3항(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 221조제1항, 제222조제3항,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
- 3.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, 제102조제1 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 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
- 4. 제107조제4항, 제108조제2항, 제138조제2항・제4항, 4.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
 -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6조제4항, 제216조제1항(제219 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, 제222조제4항, 제225조제2항, 제228조 또는 제 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
 - 취급한 자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|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-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 성하였거나 제출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 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 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.
 - 가.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
 - 나.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
 - 다. 다른 선박회사 ·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
 - 2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 한 자
 - 3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4. 제107조제4항, 제108조제2항, 제138조제2항·제4항, 제141조제2호, 제157조의2, 제162조,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. 제183조제2항·제3항. 제184조(제205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85조제2항(제205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
 - 5. 제160조제4항(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6. 제177조제2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. 제180조제4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7. 제180조제1항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 · 제2항(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. 제193조(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 사 · 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<신 설>

제277조의3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관 제277조의3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관 세청장은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한다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.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 부과를 취소한다.

② (생 략)

제279조(양벌 규정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 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한다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를 부과하지 아니하고.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 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9조(양벌 규정) ① (현행과 같음)

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 5.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

제327조(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) ① 관세**세327조**(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, 외국세관과의 세 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 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(이하 "국가관세종합정보망"이 라 한다)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

- 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· 신청 · 보고 · 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 · 승 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 명 및 확인신청 등(이하 "전자신고등"이라 한다)을 하 게 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|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 합정보망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.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 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(이하 "연계정보통신망"이 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·통지·통고 등(이하 "전자송달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-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 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,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 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.
- 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.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(연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 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)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 으로 본다.
- ⑥ (생 략)
- 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교부・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다.
- ⑧ (생 략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, 외국세관과 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 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관세정보시 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 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·신청·보고·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·승인 또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(이하 "전자신고등"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스템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.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 계된 정보통신망(이하 "연계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 · 허가 · 수리 등에 대한 교부・통지・통고 등(이하 "전자송달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 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,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 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 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.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(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)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 -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<mark>국가관세종합정보망</mark> 또는 연계
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 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・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
 - ⑧ (현행과 같음)

제327조의2(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) 제327조의2(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) ① 정부는 관세정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 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, 관세정보시스

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 는 자(이하 "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"라 한다) 보원(이하 "관세정보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를 지정할 수 있다.

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 - 1.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
 - 2.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(제175조제2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 직하는 법인
-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□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 를 함으로써 성립하다. 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
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 받아야 한다. 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. 다만, 제2항 1. 명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 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 2. 목적 정을 받은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|4.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·감독을 위반한 경우 ||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5.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[5. 임직원에 관한 사항 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
- <신 설>
-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-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| 2.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3.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・

- 어야 하며,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6. 조직에 관한 사항
- 7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8.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에 관한 사항
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1.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
- 1.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- 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♥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 용한다
-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 다.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327조의3(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) ①·② (생 제327조의3(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 략)

-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(이하"전자|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(이하"전자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~ 4. (생 략)
- 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용한 경우

<신 설>

- ④ ~ ⑥ (생 략)
- 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27조 의2제7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관세종합정보망" 은 "전자문서중계사업"으로, "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 영사업자"는 "전자문서중계사업자"로 본다.

<신 설>

- 조사・컨설팅・연구・교육・홍보
- 4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
- 장이 임명한다.
-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 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①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- 과 같음)
- 문서중계사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문서중계사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-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│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│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 5.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
 - 6.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 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
 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|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 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 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 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 한다.
 -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,

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 <신 설> 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제327조의4(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) ① 누 제327조의4(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) ① 누 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 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<mark>국가관세종합정보망</mark> 또는 전자문서중계사|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 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 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,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 나,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여서는 아니 된다. 제328조(청문)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28조(청문)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 략) 1. ~ 9. (현행과 같음) |10.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|10.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│ 취소 및 사업·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정의 취소 및 사업 ·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33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에 해 제33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 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|5.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

[6. ∼ 8. (현행과 같음)

업자

[6. ~ 8. (생 략)